

〈국회토론회〉

부산경마공원 기수, 말관리사 7명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 일시 : 2020년 1월 3일(금)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故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

국회토론회

부산경마공원 기수, 말관리사 7명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2020년 1월 3일(금) 10: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윤준호(더불어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정의당 노동본부,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프로그램

- 좌장 : 박승렬(시민대책위 공동대표, NOCK인권위원장, 목사)

- 들어가기

고 문중원 기수 가족 말씀 : 왜 내 아들(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 발제

1.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 (기수, 말관리사의 노동권 실태)
: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 경마산업 어떤 위험속에서 일하고 있는가? (기수, 말관리사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 윤간우(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토론자

1. 법률 : 마사회의 사용자 책임과 사회적 문제 /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 인권 : 위험의 외주화의 또 다른 버전 - 위장된 자영업과 노동인권 /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소)
3. 학계 : 선진경마시스템 문제 (또는 스포츠 경쟁시스템 문제)
4. 당사자

진행순서

- 주최 인사말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

박승렬 (고 문중원기수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들어가기

문중원열사 아버지 말씀 : 왜 내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 토론

좌장 : 박승렬(시민대책위 공동대표, NCCK인권위원장, 목사)

○ 발제

1.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 (기수, 말관리사의 노동권 실태) :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 (기수, 말관리사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 : 윤간우(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지정토론

1. 법률 : 마사회의 사용자 책임과 사회적 문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 인권 : 위험의 외주화의 또 다른 버전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 김용균특조위 조사위원)

3. 당사자

○ 전체토론

자료집순서

○ 발제문

1.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사람이 계속 죽는가? -----01
-기수, 말관리사의 노동권 실태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 -----38
-기수, 말관리사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윤간우(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토론문

1. 법률 : 마사회의 사용자 책임과 사회적 문제 -----59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 인권 : 위험의 외주화의 또 다른 버전 -----71
-위장된 자영업과 독점, 그리고 도박의 교차점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 김용균특조위 조사위원)
3. 당사자 -----83
고광용(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지부장)

발제문

왜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사람이 계속 죽는가?

: 기사, 말관리사의 노동권 실태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왜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사람이 계속 죽는가?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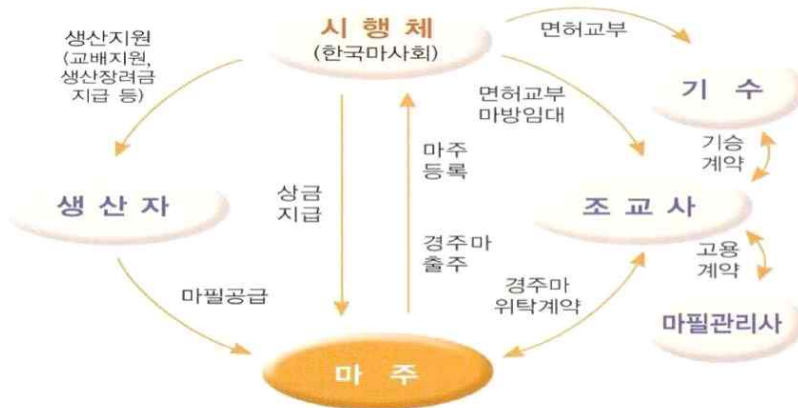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는 2004년 개장 이래 모두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가 목숨을 끊었다. 한 사업장에서 이 정도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문중원 기수는 유서를 통해 그 구조적인 문제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조교사의 부당한 지시가 반복되고 거절하면 말을 태우지 않는다고 했다. 20대에는 열심히 말을 탔지만 지금은 다리, 허리, 목 등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했다. 조교사 면허를 뺏지만 높은 사람과 친분이 없으면 마방을 받을 수 없다 했다. 심지어 “혹시나 해서 복사본 남긴다. 마사회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라는 말도 뒤이어 남겼다. 전국에 100여명 밖에 없는 기수가 “미래가 없는 노동”이라고 말하기까지 도대체 마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계속 죽고 있는지 제대로 원인을 찾아야 한다.

1. 경마산업 관련자들의 관계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가 있다. 마사회는 기수와 조교사의 면허를 교부하고, 마방을 임대하며 경마를 시행하여 상금을 지급한다. 마주들은 조교사와 경주마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조교사들은 마필관리사들을 고용하고, 기수와는 기승계약을 체결하여 경주에 출전을 하도록 한다.

<그림1> 시행체인 마사회와 각 주체들이 맺는 관계



이 그림에서 기수들은 조교사와 마찬가지로 시행체로부터 면허를 교부 받고, 기승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교사와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수들은 조교사와 기승계약이 없으면 말을 타지 못하며, 말을 타지 못하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서 조교사에 종속되어 있다. 마필관리사 역시 조교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 역시도 조교사의 지휘 명령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조교사 역시 마사회에서 면허를 교부하고, 마사회로부터 마방을 임대하지 못하면 조교사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사회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마사회는 면허와 마방임대를 매개로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를 사실상 통제하며, 구체적으로는 조교사가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통제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가 정착된 것은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 이후이다. 1971년부터 조교사와 말관리사와 기수 모두 마사회 직원이었다. 그런데 경마 비리를 이유로 1993년 7월에 개인마주제로 전환하는데 그에 따라 마사회가 가진 말을 모두 팔고, 마주와 조교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말관리사는 조교사가 고용하며, 기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조교사와 계약

을 체결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표1〉 개인마주제 전환 후 마사회 말 관련 근로자의 지위 변화

	직무	지위	계약관계
조교사	말의 훈련	자영사업자	↔ 마주 : 마필관리위탁계약 ↔ 마사회 : 마방 대부계약 ↔ 기수 : 기승계약 ↔ 말관리사 : 고용계약
기수	경주승마	독립계약소득자	↔ 조교사 : 기승계약
마필관리사	말의 관리	임금근로자	↔ 조교사협회 : 고용계약

* 마필관리사는 2017년 말 고용구조개선협의체 논의 끝에, 제주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서울경마공원처럼 개별 조교사가 아닌 조교사협회와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2.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노동 실태

(1) 경마 성적에 따른 임금 격차와 생존이 불가능한 기본급

노동자들의 소득은 경마성적에 따른 상금 분배에 따라 달라진다. 경마에서 기수나 말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생계는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전망을 잃고 떠나거나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생긴다.

문중원기수 사망 이후 전국의 기수 중 75명이 참석한 실태조사를 보면, 월 평균 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기수가 67% 가까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임금 수준’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기수들은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수입에서 개인이 상해보험도 들어야 하고 여러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특히 기수는 끝없는 몸 관리를 해야 하고, 기수생활을 하는 기간도 길지 않아서 기수생활의 소득으로 노후대

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표2〉 기수들의 월평균 수입 (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

월평균수입	빈도	백분율
300만원 이하	15	22.39
200~499만원 이하	10	14.93
500~999만원 이하	27	40.30
1000만원 이상	15	22.39

기수의 수입은 조교사가 마주로부터 받는 위탁관리비 중 크게 기승료와 경주 출전 상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승료는 마사회가 경마시행계획에 따라 책정하는데, 부산은 1두당 96,000원으로 되어 있다. 기승계약을 체결하면 기수는 그 조의 기승료의 반을 고정급(기승계약료)으로 받고, 실제 훈련한 것에 대해서 기승료(말 훈련비)를 지급받는다. 경주에 출전하여 상금을 받으면 그 비용은 마사회가 직접 기수에게 지급을 한다. 그래서 말을 타지 못하는 기수들은 기승계약료와 기승료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다보니 월 150만원 정도 받는 기수도 있다. 기수들은 말을 타고, 순위 안에 들어야 소득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하인 기수들이 22%에 달한다. 순위 안에 들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출전의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과 수당 다 합쳐도 200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상금이죠. 예를 들어 800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200 빼고 600은 상금이죠. 어떤 조에서는 600만원 가져갈 때 다른 조에서는 6만원 가져가기도 하고, 상위 조는 못 느끼겠지만, 하위 조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해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애를 커가고 모시는 부모님들 나이 들어가, 그럼 방법이 없어요. 앞날이 없는 거죠. 대출

받아야죠. 그래도 안 되면 여기서 목 매달아야죠. 누군가는 꼭 죽어야 하는 시스템인 거죠.”

- 2017. 7. 19. 부산경남 경마공원 말관리사 인터뷰

마필관리사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마필관리사도 많다.

(2) 조교사에게 종속된 기수와 마필관리사

마필관리사들은 조교사가 고용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조교사협회가 고용하는 서울경마공원과 달리 2018년까지 조교사 개인이 고용하는 부산경남 경마공원 마필관리사의 고용불안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너 나가야겠다”는 (조교사의) 말에 안나가다가 결국 나가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해고라고 생각한다. 그 (버티는)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다.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협의체, 7차회의 자료 중 부경 말관리사 증언

이 증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교사에게 개별로 고용된 말관리사들은 언제라도 조교사의 말에 따라 해고될 수 있었다. ‘2017년 고용구조개선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산경남 경마공원과 제주경마공원도 서울경마공원과 마찬가지로 조교사협회를 구성하여 협회가 말관리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고용의 불안정성은 조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교사들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기수들은 조교사들과 고용계약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기승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말을 태울지 아닐지를 조교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조교

사들에게 더 종속될 수밖에 없다. 기수들은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하고 일상적으로 말을 훈련시키지만 경주에서 그 말을 타지 못할 때가 많다. 조교사들은 다양한 기수들을 다양하게 배치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때로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더라도 따르는 기수들을 말에 태우려고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계약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2019년 문중원기수 사망 직후에 기수들과 한 <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기수의 53%는 기승계약을 보지 못했고 서명한 적도 없다고 한다. 아래 계약서에서 볼 수 있듯이 조교사의 의무는 사실상 권리이고, 기수는 조교사의 지시에 따를 것만을 요구받는다. 물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정당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없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와 불이익 금지 등도 다루고 있지 않은 형식적 조항에 불과하다.

조교사와 기수의 계약서 일부

3조 (조교사의 의무)

- ① ‘갑’은 관리 마필의 경주기승과 조교보를 ‘을’에게 담당케 하고 관리 마필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교계획 수립 시행 및 기승 작전을 지시할 의무를 가진다.
- ② ‘갑’은 ‘을’이 제4조의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경주기승과 조교 등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기수의 의무)

- ① ‘을’은 ‘갑’의 정당한 지시와 지도에 따른다.
- ② ‘을’은 ‘갑’의 관리 마필의 특성 파악 및 기승조교를 하여야 하며 ‘갑’의 지시에 따라 마필 조교 및 마방 업무 보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경주에의 기승시 ‘갑’의 정당한 기승작전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 ④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주 기승 및 조교보조를 거부할 수 없다.
- ⑤ ‘을’은 ‘갑’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부상을 당해서 말을 타지 못할 때에 조교사가 일방적으로 기수와 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조교사의 권한이다. 기수들이 위탁 계약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조교사에 종속된 노동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와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고 최저임금도 제외되고,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 개인들이 상해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3) 불합리한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렇게 종속관계가 심해지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조교사들은 작전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작전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의견도 내야 하고, 일상에서 말을 관리하거나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도 기수와 마필관리사, 조교사가 서로 의논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의 권력관계는 조교사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것이 인격적인 모멸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잘 나가는 조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조교사가 욱하고 소리치는 게 밖에까지 다 들려요. 돈을 잘 버니까. 일은 똑같이 하는데, 다른 데는 200 가져갈 때 그 조에서는 600, 700씩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돈 그만큼 버는 게 내 덕분이다, 충성을 다해라. 욱을 달고 사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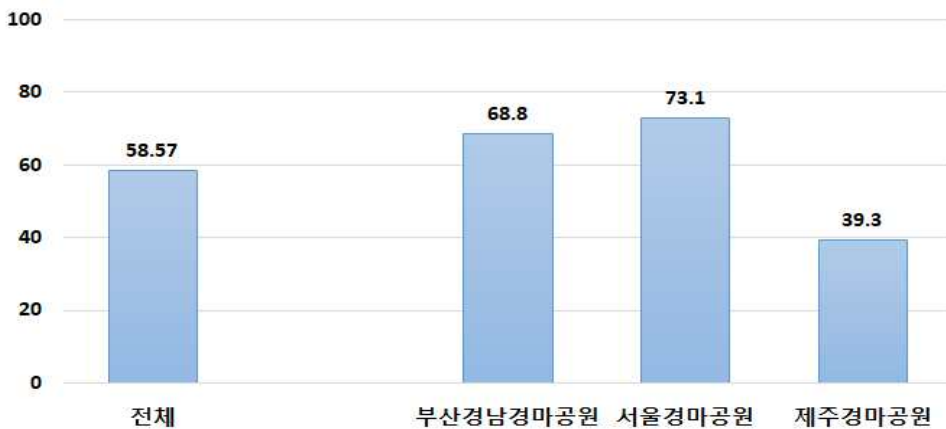
- 2017. 9. 17 부산경남경마장 말관리사 인터뷰

조교사에 의한 자의적 해고와 폭언 폭행에 대한 증언이 많은 상황이다. 조교사가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기수들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수들은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말들은 주행습성이란 게 있는데 그 습성에 맞지 않은 작전지시를 내려서 아예 인기마를 못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많았지. 도대체 누굴 위한 건지... 요즘엔 승군해서 조금 못 뛰면 레이팅을 낮춰서 하위군으로 떨어트린다고 작전지시부터 아예 대충 타라 한다. 그러고는 하위군으로 떨어지면 부담 중량이 너무 많으니 중량이 떨어질 때까지 몇번 더 바닥을 치거나 아님 아예 감량기수를 태운다 한다.”

- 고 문중원 기수의 유서 중에서

<그림2> 조교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



위의 표에서 보듯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선다. 부당한 지시라는 것은 마필이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출주율이 마방대부심사에 반영되기 때문에 다리가 안 좋은 말을 출전시키거나, 말을 살살 타게 해서 승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문제는 이것이 부당한 지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크게 불이

익을 받기 때문이다.

〈표3〉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

	기승기회 축소 (박탈)	문제 말 배정 기수에게 책임전가	명예훼손
부산경남경마공원	87.5	75	37.5
서울경마공원	90.4	52.4	19.1
제주경마공원	82.61	56.5	34.8

말관리사와 기수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조교사에 의해 삶이 휘둘리지 않으며, 위상이 높아져야, 부당한 지시도 사라지고 경마에서의 비리도 근절될 수 있다.

3. 선진경마와 부산경남 경마공원 노동자의 죽음

마필관리사와 기수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기도 했다. 때로는 노동안전에 큰 위협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변화를 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런 노력으로도 변화가 어렵다고 느낄 때 좌절하고,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된다. 지금까지 죽음을 택한 7명의 마필관리사와 기수들은 모두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이었다.

2005년 이명희(26) 기수(유서 :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

2010년 3월 박진희(28) 기수 (유서 :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

2011년 11월 박용석 말관리사 (유서 : 과도한 업무 부담 호소)

2017년 5월 박경근 말관리사 (유서 : × 같은 마사회)

2017년 8월 이현준 말관리사

2019년 7월 조성곤 기수

2019년 12월 문중원 기수

왜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선진경마’라는 이름의 무한경쟁과 승지독식 체제가 부산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 선진경마라는 이름의 승자독식 구조

한국마사회는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과 함께 조교사와 기수, 마필관리사와의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외부화했다.

그런데 직접고용되어 있던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이 고용의 불안정성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강하게 제기하자, 마사회는 마필관리사들의 경우 조교사협회를 만들어서 고용하는 형식을 택했고, 부가순위상금이라고 해서 순위상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기본급 형태로 마필관리사들과 기수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부가순위상금은 기수와 말관리사가 균등 분배하기 때문에 고정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서울경마공원의 기수와 말관리사는 월 300만 원 이상의 기본급인 것이다.

그런데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2004년에 개장했다. 개장 당시부터 마사회는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무한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그래서 마필관리사의 경우 서울경마장에서처럼 조교사협회 고용이 아니라 조교사 개인들이 고용하는 형태를 취했고, 부가순위상금도 없애고 순전히 순위상금으로 임금이 주어지는 방식을 택했다. 게다가 비경쟁성 상금을

줄이고 경쟁성 상금을 확대했다. 외국인 기수와 조교사, 말관리사를 도입하여 이들이 프리기수로 일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더욱 부추겼다.

그 결과 부산경마공원은 순위에서 밀려나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안 되며, 조교사들의 권위가 더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필관리사들과 기수들은 조교사들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마필관리사들과 기수들을 극한 상황으로 내몬 것이다. 기수들의 경우 서울경마공원 기수들이 부가순위상금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의 기본급을 받는데 반해, 부산경마공원 기수들의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이 그 절반에 불과했다. 이런 삶의 안정성의 차이가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큰 차이로 다가온 것이다.

제주에서는 임금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관리자 몫의 상금을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의 비중을 70%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2014년 조교사협회 측에서 단체협약을 파기한 후로는 노조에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취합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최소한 60%가 되도록 재분배한 바 있다. 선진경마라는 이름의 경쟁체제는 서울경마공원과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모든 것을 능력으로 인식했다. 승자독식구조로 능력있는 기수, 혹은 능력있는 마방에 속한 마필관리사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로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경주를 뛰면 1등, 2등, 3등, 4등 하잖아요. 진짜 걸으로는 축하한다 하지만, 속으로는...(한숨) 경주날에는 같이 (경주를) 뛰면 서로 한 마디도 안 해요. 제가 1등해도 신나는 표현도 못하고, 내가 돈 벌면 다른 친구는 돈 못 버는 거 알잖아요. 경쟁성 상금이 원체 많이 차지하니까.”

- 2017. 9. 17. 부산경남경마장 말관리사 인터뷰

그런데 이렇게 경쟁성이 높아지면 경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는 기수가 83.3%에 달한다.(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 조교사들도 부당한 지시를 남발하게 되고 동료 기수간에 갈등이 유발되며,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표4>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

	빈도	백분율
부당한 지시로 기수의 안전을 위협	29	38.7
동료 기수간 갈등을 유발	37	49.3
내외국인 기수 차별로 인한 부당한 대우	44	58.7
건전한 경마문화를 저해	25	33.3

경쟁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업무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고 일터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지게 된다. 위 질문에 대한 기타 답변으로 ‘정신건강 위협’이나 ‘자존감 상실’의 답변도 있었다. 마필관리사의 경우, 부산에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무려 49%로서 절반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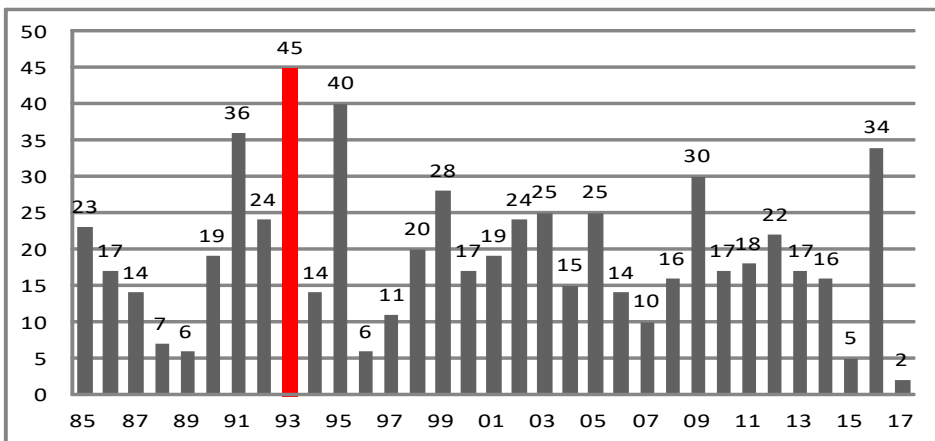
<표5> 응답자의 현 직장에 대한 전망과 만족도 (말관리사 고용구조 개선방안 연구. 2017)

	서울		부산		제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우 그렇다	13	5.4%	6	3.6%	0	0%	19	4.0%
그런 편이다	55	22.9%	21	12.7%	4	5.8%	80	16.8%
보통이다	109	45.3%	59	35.5%	27	39.1%	195	41.1%
아닌 편이다	37	15.4%	41	24.7%	23	33.3%	101	21.3%
전혀 아니다	26	10.8%	39	23.5%	15	21.7%	80	16.8%
합계	240	100%	166	100%	69	100%	475	100%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첫째는 무한경쟁을 만들어서 승자독식구조를 만들어서 결국 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은 생계조차 유지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승자독식구조가 과연 합리적인가’이다. 경마 자체는 경쟁성 스포츠이지만, 그 경마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안정성과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마시행 주체들은 비리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조교사들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경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말을 타면 누구에게나 1등을 할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조교사들도 정당하게 승부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경쟁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부당지시를 하게 된다. 이런 부당한 지시는 경마비리와 연관된다. 경마와 연관된 여러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매우 엄격하게 경마 관계자들의 부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개인마주제로의 전환도 경마비리를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개인마주제 이후에도 경마비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림3> 연도별 부정경마 비위 그래프



부정경마를 막으려면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필관리사와 기수, 조교사가 서로 동등하게 상의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 부정경마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조교사에게 종속되어 있고, 마필관리사와 기수들이 자기 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위가 쉽게 저질러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마필관리사와 기수들은 부당한 지시를 계속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문 : 마주가 자신의 말 상태, 또는 다른 출전마와 역량을 비교하는 질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런 일을 조교사에게 요청, 지시받은 적이 있는지

- 답 : 마주는 위탁된 말 관리 업무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말에 대해 질의하기 때문에 관리사의 입장에서는 응대하지 않을 수 없음. 마사회 입장에서는 말에 대한 정보를 넘기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면 말(위탁)을 빼버림. 마주들이 친구들을 대동하고 마사에 방문하여 말의 상태, 성적의 전망에 대해 질의를 하고, 또 관리사에게도 베틀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마방을 이끌어야 하는 팀장으로서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음. 이런 압박이 힘들어서 아예 마주의 연락을 스팸 차단한 적도 있음. 이런 것들이 팀장급의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임.

-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협의체 회의 의사록 의제6호

- 부산경남경마장 말관리사의 증언

승자독식구조에서 권력관계도 한쪽으로 쏠려있고,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부정과 비리를 부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선진경마체제-무한경쟁체제’는 그런 현실을 예비하고 있는 셈이다.

(2) 일방적인 권력 구조에서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는 말관리사의 고용구조도 조교사협회 고용이 아니라, 조교사 개별고용이었다. 그만큼 조교사들의 권한이 크다는 의미이다.

〈표6〉 말관리사의 조교사와의 갈등시 실직위험 (말관리사 고용구조개선 연구, 2017)

	서울		부산		제주		합계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우 그렇다	44	18.5%	80	48.2%	30	44.1%	154	32.6%
그런 편이다	83	34.9%	47	28.3%	22	32.4%	152	32.2%
보통이다	64	26.9%	23	13.9%	11	16.2%	98	20.8%
아닌 편이다	34	14.3%	10	6.0%	5	7.4%	49	10.4%
전혀 아니다	13	2.8%	6	1.4%	0	0%	19	4.0%
합계	238	100%	166	100%	68	100%	472	100%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필관리사가 조교사와 갈등할 경우 실직의 위험이 높아진다. 부산경마공원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서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기수들도 마찬가지이다. 조교사의 권한이 막강하다보니 기수들은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기수들의 잘못된 지시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승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표7〉 부당한 지시에 대해 기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

	빈도	백분율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처럼 탄다	47	71.22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만둔다	2	3.03

조교사로 전향한다	1	1.52
부당한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다	11	16.67
기타	7	10.61

부당한 지시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 부당한 지시에 의해 기수들이 피해를 입는데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은 당연히 억울함과 분노를 낳는다. 그런데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만들어진 이후 선진경마의 폐해로 경쟁적 분위기가 매우 강했고,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서울경마공원은 문제가 생겨서 설령 기승을 못하게 되더라도 부가순위 상금에 의해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받는 반면에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생계 자체가 유지 안 되는 상황이므로 더욱 울분이 강하지만 조교사들에게 순응하게 된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위성적이 계속될 경우 면허 갱신도 문제가 되므로 기수들은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이런 경쟁구조와 권력관계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기수들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표8> 마사회구조에서 크게 바뀌어야 할 부분은? (2019.12 경마기수 실태조사)

	빈도	백분율
갑을구조에서 평등구조로 전환	41	71.94
기수 및 마필관계가 처우개선	40	70.18
무한경쟁에 대한 마사회 제도 개선	39	68.42

조교사들이 위 질문에 대해 ‘기타’로 답변한 기타 내용을 보면 “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갑질을 계속할 것이다”, “갑질구조 개선 필요” “경쟁에 대한 면허 위험의 제외를 바랍니다” “너네들도 무한경쟁하고 하위 5% 퇴사시켜라” “말도 안 타본 것들이 재결위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고, 기수의 면허를 본인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수를 막대하며 썼다 버리는 일회용 취급을 하는 마사회 직급 높은 양반들이 다 개선되어야 함. 기수가 경마의 꽃이라지만 사실상 경마장 일회용”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변화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

조교사협회가 고용을 하고 있는 서울 경마공원의 경우 노동조합은 조교사협회와 마필관리사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동조건을 지켜왔다. 제주 경마공원의 경우 2014년까지 관리사 노조와 조교사협회와의 단체교섭을 했으나, 단체협약이 파기되고 조교사협회가 해체된 후에는 관리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조교사)들도 적지 않고 제2노조도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우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이 있지만 조교사들의 개별 고용형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교사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기도 어려웠고, 개별 조교사들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통일하기도 어려웠다.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합원이었던 박경근, 이현준 마필관리사는 이와 같은 현실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투쟁 이후에 제주와 부산경남 경마공원도 조교사협회 고용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2018년 노조와 조교사협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야간경마 등에 대해 노조와 협의한다’고 해도 권한이 있는 마사회의 지침을 어기기는 어렵다. 결국 반쪽짜리 단협인 셈이다.

기수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고자 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마사회가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아갈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 기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위 <표9>의 질문에서 '조교사가 된다'는 답변을 한 기수가 있다. 문중원 기수가 그랬다. 그래서 그는 오랜 노력 끝에 조교사면허를 받았고 해외연수도 다녀왔다. 그러나 그 꿈은 마사회의 잘못된 구조로 좌절되었다.

“하루빨리 조교사를 해야겠단 생각으로 죽기살기로 준비해서 조교사면허를 받았다. 그리고나서도 매번 경매 때마다 내려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마주님들과 친분도 쌓고 그덕에 마방만 받으면 바로 입사시켜 준다는 약속도 많이 받았다. 그럼 뭐하나...마방을 못 받으면 다 헛일인데, 면허 딱지 7년이 된 사람도 안주는 마방을 갖 면허 딱지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되니...”

- 고 문중원 기수의 유서 중에서

조교사는 마사회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딸 수 있다. 그런데 조교사로 일을 하려면 마사회로부터 마사를 대부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마사회가 심사하고 마사회가 교육하여 조교사면허를 따게 하고도, 마사대부를 위한 심사를 다시 거치게 하고 있고 바로 여기에서 불공정과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마사대부 심사는 종합평가(정량 80점, 정성 20점)를 통해 진행된다. 정량 평가는 마주로부터 경주마 24마리 이상 관리위탁 의향서를 받으면 70점, 근속기간 10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마사대부 발탁은 정성평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성평가는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 응답으로 구성(사업목표, 재무계획 및 경마산업 이해도 7점, 경주마 확보/사양 및 조교관리 계획 7점, 인성/인사 및 노무관리 방안 6점)된다. 그런데 마사대부 발탁을 좌우하는 이 정성평가는 공정하지 않았다.

마사회와 친분 여부가 마사대부 발탁을 결정한 것이다. 문중원 노동열사의 경우 조교사 면허 취득이후 4년간 마사대부 심사에서 발탁되지 못했다.

마사대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산경마공원 경마처장은 친분이 있는 두 명에게 모두 마방을 줄 수 없으니 ‘예비’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부산경남경마본부에서 최근 2년간 발탁한 마사대부는 3인의 평균 면허취득 이후 발탁까지의 기간은 1년6개월로 매우 짧고, 예비발탁까지 두고 있어, 최대 8년 동안(고인은 5년) 준비하고 기다려온 적체인원에게 큰 박탈감을 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다시 옥상옥 심사의 필요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교사면허를 취득하고도 마사대부로 발탁되지 못한 인원은 전체 17명. 서울경마본부 소속이 10명, 부산경마본부 7명이다. 이중 마필관리사가 10명, 기수가 7명이다. 면허 취득 이후에 마사회가 발탁하지 않아서 적체된 기간은 3년 6개월 가량이고, 2019년에 면허취득 한 인원을 제외하면 4년 2개월가량이다. 2017년 이후 마사대부로 발탁된 인원은 8명이고 서울, 부경 각 네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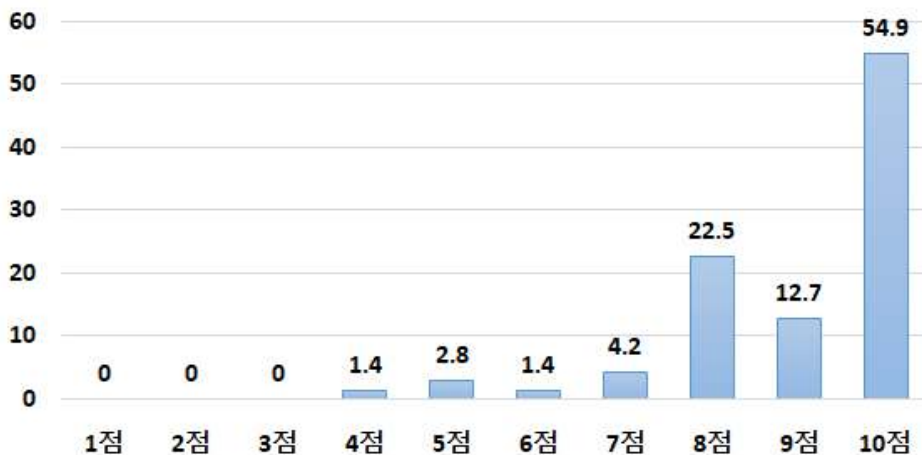
노조를 통해서도, 그리고 개인적 노력으로도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문중원 기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4. 마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문제는 겉으로는 조교사의 갑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교사 역시 마사회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으며, 모든 권한은 마사회에 있다. 한국마사회는 ‘선진경마’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시행체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경마 시행 주체인 마주와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마사회는 ‘마사회법’에 의해 경마 시행 전체에서 강력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권한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해왔던 것이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계기로, 책임을 회피하는 왜곡된 고용구조, 그리고 무한경쟁체제의 다른 이름인 ‘선진경마’를 바꾸어야 할 책임이 마사회에 있다. 그 전에 고인에 대한 사죄가 우선일 것이다.

〈그림4〉 마사회가 기수운영/조교사운영/마방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



마사회가 기수운영과 조교사운영, 마방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기수의 54.9%가 10점을 선택했다. 이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사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중원 기수도 유서를 남기면서 “마사회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하면서 복사본을 남기기도 했던 것이다.

(1) 마사회가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노동조건을 결정한다.

마사회는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상금의 항목과 규모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마필관리사나 기수들의 소득이 결정된다. 마사회는 연말에 ‘경마 시행계획’을 세워 다음 해의 상금을 책정하는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물가상승률 및 경마시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범위에서 책정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말 관계자들 전체의 의견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결정은 마사회의 몫이다.

2019년 경마 시행계획에 의하면 상금의 주요 지급기준과 순위상금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표9〉 2019년 순위상금 배분율

순위별					대상자별			
1위	2위	3위	4위	5위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57	21	13	5	4	78.25	8.40	5.01	8.34

*대상자별 순위상금 배분율은 출전장려금 등 해당경마장 기타 상금항목의 지급기준 및 규모에 따라 변동

〈표10〉 상금 주요 지급기준

□ 주요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1위	2위	3위	4위	5위
순위상금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57%	21%	13%	5%	4%
부가상금	마주	1위		2위		3위
		60%		30%		10%
출전장려금	마주, 조교사, 말관리사	마주		조교사, 말관리사		
		1~9위		1~8위		
* 대상·특별경주 : 전 두수 지급						
기승료	기수	일반경주		대상·특별경주	오픈경주	
		주간	야간		혼	원정
		120천원	150	200~500	500	2,500
육성인센티브	마주	대상		지급연령	지급액	
		3~6등급 국산마		3세 3개월까지	순위상금의 20~40%	
* 육성심사합격마 중 브리즈업경매 낙찰마는 10%p 추가 지급						
시리즈 경주 최우수마 인센티브	마주, 조교사	마주 90%, 조교사 10% 지급 * 성·연령 조건별 최우수마 선발 시리즈[트리플 티아라, 쥬버나일 시리즈, 퀸즈투어]				
		마주 80%, 조교사 20% 지급 * 기타 시리즈경주 [스프린트, 스테이어, Road to GI (챔피언십 및 Premier) 시리즈]				
혼합대상경주 인센티브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혼합 대상경주에 입상한 국산마 순위상금의 10% 추가 지급(대상자별 배분율 적용)				
국제경주 입상 인센티브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국제경주 입상 시 해당 순위상금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				
최고기록 갱신 인센티브	마주, 조교사	전략거리(1200m, 1800m) 최고기록 갱신 시 인센티브(정액) 지급				

* 상기 지급기준은 시행체의 가이드 라인이며, 경마 참여주체별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금의 지급 기준과 배분율의 결정과정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의견은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과 같이 부가순위상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마사회의 의지이다. 그런데 마사회는 오히려 부가순위상금을 없애려고 시도하여 서울 경마공원도 제주

나 부산경남 경마공원처럼 경쟁체제로 만들려고 한 바 있다.

〈표11〉 마사회의 부가순위상금 이전 방안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16년 최초안	100	67	45	23	-		
2016년 수정안	100	80	50	20	0		
2017년 수정안	100	80	70	50	30	20	0

마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서울경마공원의 부가순위상금 이전 방안을 제출했고 관철시키려고 했으나, 말관리사 고용구조개선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다시 수정이 되어 부가순위상금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2) 면허권과 징계를 통한 통제

또 마사회가 기수나 마필관리사를 통제하는 방식은 면허제도와 징계권 한이다.

〈표12〉 마사회가 기수를 통제하는 방식 (2019. 12. 경마기수 실태조사)

	빈도	백분율
기수면허 유지권	57	76.0
조교사면허 취득권	38	50.7
마방대부 심사권	26	34.7

마필관리사나 기수로 일하려면 마사회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수양성 및 마필관리자 교육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이에 따라 교육을 하고 기수들에게 면허를 준다. 마필관리사의 채용에 있어서도 적격정진단이라고 하여 마사회가 개입을 한다. 그리고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갱신과정이 있다. <경마시행 규정>에 의하면 마사회 임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면허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조교사와 기수의 면허시험 관리 및 갱신심사를 한다. 이들이 면허갱신에 대한 심사도 하기 때문에 기수들은 마사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마사회는 징계권한도 행사한다. 마사회는 마사회법 시행령 25조를 통해 마주와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제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심판위원 제재 가이드라인> 중 II-3. 품위유지의무 위반

위반사유	가이드라인	근거규정
. 성희롱 성추행 행위	상벌위원회 부의	제 108조 제23호
. 개최운영원 욕설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 -욕설, 폭언 또는 폭행 -협박 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 -물리적.신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상벌위원회 부의	제 108조 제 21호 제 108조 제 22호
. 경주마 관계자 상호간 부적절한 행위 -폭언, 욕설, 협박 등 부적절한 행위 -폭행, 폭력, 위력을 가하는 행위 등	상벌위원회 부의	제 108조 제23호
고객과의 말다툼, 폭언, 욕설 등 부적절한 행위	과태금 500만원 이하 또는 면허정지 5개월 이하 또는 상벌위 부의	제 108조 제23호
경주 중 기수간 폭언, 욕설 또는 물리적 행동	과태금 500만원 이하 또는 면허정지 5개월 이하 또는 상벌위 부의	제 108조 제23호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	견책/기승정지 2~16일/과태금 100~1000만원/상벌위원회	제 108조 제23호

그런데 위 <표12> 마사회가 통제하는 방식의 기타 항목에 보면 “구체적으로 제재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마사회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음. 마사회법 자체가 당사자들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변경 가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음”이라는 답이 있다. 그 외에도 심판실에서 자주 부르는 것도 문제로 들고 있으며, 특히 “마사회에 찍히면 그냥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야말로 마사회가 포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3) 마사대부를 통한 통제

마사회가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마사대부이다. 조교사는 마사를 대부하지 못하면 조교를 할 수 없다. 마사를 많이 대부받으면 그만큼 많은 말을 조교할 수 있으므로 1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마사대부를 받지 못하면 아예 조교사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마사대부가 가장 강력한 권한인 셈이다. 그런데 이 마사대부의 권한은 모두 마사회가 갖고 있다.

<마사대부 규정 중>

제8조(대부 등)

- ① 마사의 대부는 마사대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 ② 조교사별 마사대부결과는 조교사협회에 일괄 통지한다. <개정 2003.7.14.>

제9조(대부마사의 조정)

- ① 회장이 정한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대부마사를 조정한다. <개정 2003.7.14., 2016.3.18.>
- ② 회장은 조교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그 성적에 따라 5마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마사 규모를 증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2009.5.22., 2016.3.18.>
- ③ 조교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성적과 관계없이 5마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부마사규모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2016.3.18.>

- 1.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교사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때 <신설 2016.3.18.>

2. 대부마사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때 <신설 2016.3.18.>
3. 본회의 재산관리상 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때 <신설 2016.3.18.>

마사회는 대부의 규모와 성적에 따른 증감 결정, 조교사의 준수유무나 적절한 운영 등이라는 이름으로도 대부마사 규모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사대부와 연관된 점수를 깎는다. 그 때문에 산재은폐가 벌어지는 것이다. 경주성적 하위마방의 대부마사 수를 줄여서 경쟁성을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사대부는 조교사와 마필관리사의 생존과 직결되고, 기수는 조교사들의 통제 아래 있으므로 마사회는 마사대부를 통해 사실상 조교사와 마필관리사와 기수들을 통제한다.

(4) ‘선진경마’라는 이름의 책임회피와 쥐어짜기 구조

지금까지 마사회는 마사대부에서 하위 마방의 대부마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경쟁성을 높여왔다. 그리고 상금의 분배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경쟁성을 더욱 강화해왔다. 소위 ‘선진경마’라는 것은 자율적인 경마주체들 간의 경쟁인데, 한국은 경마가 여러 경기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구조도 아니고, 엄격한 통제 아래 마사회가 경마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의 권한도 매우 강하고 자유로운 경쟁 구조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게다가 경마에서 말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수들에 대한 상금 분배율도 매우 적고, 기본적인 권리도 주어져 있지 않다. 자율적인 경기도 불가능하고, 경마 관계자 간의 힘관계가 매우 불균등한 상황에서의 ‘선진경마’는 허구이며, 결국은 기수와 마필관리사, 심지어는 조교사마저도 쥐어짜는 구조일 뿐이다.

마사회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선진경마’를 만든 것도,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이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만든 것도, 그리고 온갖 종류

의 산재를 은폐하도록 만든 것도, 이런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동 조합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무력한 것도 모두 마사회이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해 마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이다. 마사회는 기수들이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필관리사에 대해서도 조교사협회에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속관계로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한다. 또한 계약의 형식이 조교사협회 고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는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대법원은 판례는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있는 원청사업주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제소 사례를 통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사내하청/파견 노동자들도 누리도록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삼성전자서비스 제소 사례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마사회가 이미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

5. 제언

(1) 마사회의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마사회는 매우 폐쇄적인 구조이다. 개인마주제로 전환했고 자신들은 시행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모든 경마관계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마사회는 공공기관이다. 경마가 사행성 도박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경마 주체들을 이런 경쟁으로 내몰고도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2014년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 이래 무려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근본적인 수술 없이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감독 기관의 책임도 크다.

마사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이다. 이미 마사회법에서도 관리감독의 권한과 마사회장 해임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무려 7명의 마필관리사와 기수가 사망하고, 심지어 유서를 통해 마사회의 비리와 문제를 폭로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사회법>

제4절 감독

제44조 (명령·처분 및 검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사회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사회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사회의 사무소·경마장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이사회 출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마사회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마사회는 사행성기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마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좋지 않다. 마사회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그 외에 외부인사들이 이사회나 관리감독 기구에 들어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와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마사회가 경마 관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사대부 심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문중원 기수는 유서를 통해 마사대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마사회가 내놓은 개선안은 심사위원회 개선안으로서 현재 내부 5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되었지만 이것을 이후에는 내부 5명, 외부 5명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마사대부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심사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나 회의 녹취록 등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부 심사위원에 노조 추천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하는 과정도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들을 존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회복은 어렵다.

(2)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

현재 마필관리사는 조교사가 고용한 노동자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인 마사회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조교사협회와의 단체교섭에서 정한 노동조건은 실효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서는 조교사협회와 5월 1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 하지만 마사회가 그날 경주일정을 잡게 되면 조교사협회와의 교섭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도 2017년 고용구조개선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조교사협회가 집단고용을 했다. 이것은 조교사 개인이 함부로 마필관리사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제재조치로 인해서 두명의 조교사 일을 그만두게 되자, 그곳에서 일하는 마필관리사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마방으로 배치해야 하는데, 마사회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조교사협회에서도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니, 결국은 조합원들이 돈을 걸어 마필관리사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있다. 고용형태만 바꾸었을 뿐, 마사회와 조교사협회가 여전히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다. 진짜 책임자인 마사회가 교섭에 나와서 함께 합의하지 않는 한 조교사협회와의 교섭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수들은 더 심각하다. 마사회는 기수들이 위탁계약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기승계약도 마사회가 아니라 조교사들과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교사들의 면허와 마방의 운영, 그리고 기수들의 면허와 징계, 그리고 경마주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 모든 점에서 마사회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용의 형식을 빌미로 자신들의 책임

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기수노조를 인정하고 마사회는 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의 힘 관계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이 왜 죽고 있는가? 일방적이고 왜곡된 지시가 난무하고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왜 조교사들은 부당한 지시를 하는가? 마사회가 추진하는 경쟁체제 안에서 그들도 피해자이며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개인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집단적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집단적 힘은 ‘협회’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섭의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마사회이다.

이미 마사회는 <한국마사회 인권경영헌장>을 발표하며 그 내용도 천명한 바 있다.

<한국마사회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의 이해관계자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 말관계자, 협력사,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종교·성별·인종·학력·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

한다.

하나, 우리는 말관계자 및 협력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말산업 육성전담기관으로서 말의 학대방지와 복지증진을 선도하며, 동물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이 인권경영현장의 내용에 부끄럽지 않도록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번영할 수 있도록 교섭에 나서기를 바란다. 설마 이 인권경영현장이 마사회 사무직으로 구성된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마필관리사 그리고 기수 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3) ‘선진경마’ 폐지하고 주체들과 논의하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선진경마 제도를 폐지하고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더 이상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마사회의 책임을 외주화하지 말고, 무한경쟁체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않으며,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마사회는 문중원 기수 사망 이후 개선안이라고 하여, 12월 26일과 28일 ‘2020년 부산경남 기수상금 시행안’ 및 ‘추가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거기에서는 1위 기수가 받던 상급배분율 57%를 축소하여 2위, 3위 기수에게 분배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4, 5위는 분배율에 변화가 없고 나머지 순위권 밖의 기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경륜이나 경정 등에서는 출전을 하면 상금을 분배하는데, 경마는 출전을 하더라도 5위 안에 들어야 상금을 분배한다. 여전히 승자독식구조이며, 순위권 밖이

나 하위권 순위 기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다.

<표12>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순위상금 조정안 ※서울·부경
동일규모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2019년	57	21	13	5	4
2020년	55	22	14	5	4

마사회는 기수들이 말과 더불어 경마에서 핵심 주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에게 돌아가는 상금의 총액도 늘리지 않고 있다. 오랜 훈련과 교육을 거친 기수들이 10-20년 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 위험도도 매우 높다. 소득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기수들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마사회는 경주마 훈련비를 현행 125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 상향조정하여 기수의 소득안정성을 높였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경주마 훈련비 역시 경주마 훈련을 시키는 기수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조교사에 의해 훈련에서 배제당하는 기수는 받을 수 없다. 즉 문중원 기수처럼 조교사의 부당지시를 거부하여 배제되는 일은 여전하다는 뜻이다. 핵심은 조교사와 계약할 때 받은 기승계약료를 높이는 것이고, 서울경마공원처럼 부가순위상금을 통해 기본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승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우 1일 기승횟수를 11경기에서 7경기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은 금요일 경기는 11경기, 일요일 경기는 6경기이다. 7경기로 제한해도 일요일에는 여전히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경주출전이나 기승훈련 상하한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는다. 게다가 외마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쟁체제를 더 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마사회의 대응책은 셀프개혁이 얼마나 한계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사회는 무한경쟁체제에 여전히 머물고자 한다. 또한 마사회법에 의해 권한은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마사회는 공공기관으로서 건전경마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하게 경마를 관리해야 하지만, 동시에 경마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건강한 노동조건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경마가 경쟁을 본위로 하더라도 경마를 수행하는 인력은 더 안정적이어야 하고 마사회는 더 공공적이어야 한다.

성과중심의 체제는 경마 관련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비리와의 연결된다. 사행성을 조장하는 기관이 아니라 건강한 레저스포츠로 자리잡기 위해서라도 마사회의 '선진경마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고용형태도 바뀌어야 하고, 상금의 분배기준도 바뀌어야 하며, 각종 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할지도 바뀌어야 한다. 마사회의 운영 자체가 개방적이어야 하고 공공적이어야 한다.

마사회는 먼저 문중원기수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고인의 죽음에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 문중원 기수가 유서에서 밝힌 비리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진상조사 기구를 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경마를 폐기하고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경마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열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포함하고, 외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마사회가 지금까지의 관행 때문에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마사회의 관리감독 기관인 농림축산수산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 죽음을 통해 바뀌는 것도 끔찍한데, 무려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공기관이 혁신을 하지 않고 과거의 형태를 고집한다면, 이 공공기관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끝>

발제문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

: 기사, 말관리사의 안전보건 실태

윤간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경마산업 어떤 위험에서 일하고 있는가?

기수, 마필관리사의 안전보건 특성

원진직업병 관리재단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윤 간 우

2018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고의무를 가장 많이 위반한 사업장은 마사회의 서울경마장조교사 협회이다. 2위 사업장과 비교해 4배 이상 높다. 3위 사업장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이다.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상위 15개 중 3곳이 마사회와 관련되어있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산업재해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반칙을 저지른 이유는 공포스러운 산업재해건수를 숨겨 관리감독으로부터 피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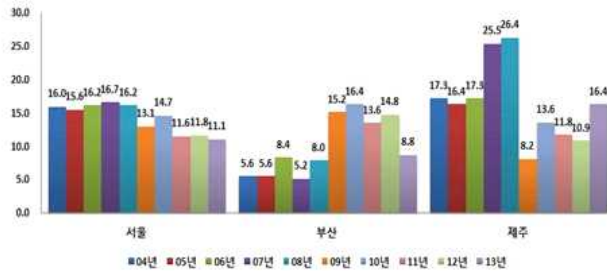
3.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

○ 최근 3년간('15.1.1.~'17.12.31) 산재발생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12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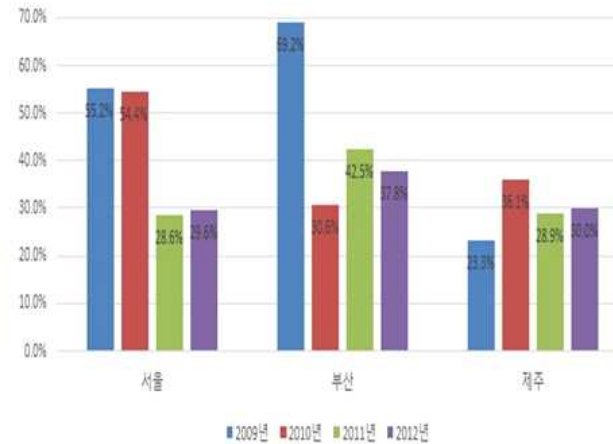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횟수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50
지에스엔텍(주)	울산 남구 용잠로 353	12
한국마사회부산경남경마본부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12
한국특수형강(주)철서제강소	경남 함안군 철서면 공단동길 98	11
디엔산업개발(주)	서울 중구 퇴계로73가길 28 (신당동, 4층)	10
금정구청(총무과)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84	8
한국특수형강(주)	부산 사상구 장인로77번길 52 (학장동)	8

1. 경마종사자 재해 현황 - 2013년/2014년 조사 결과

< 마필관리사 재해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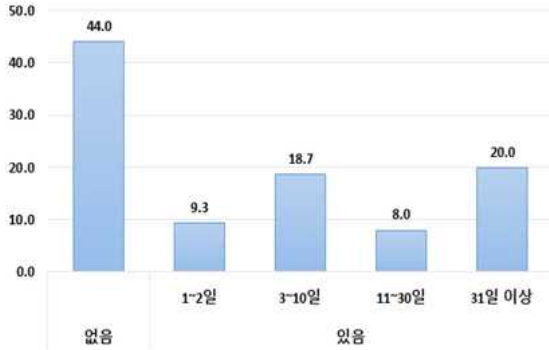
< 기수 재해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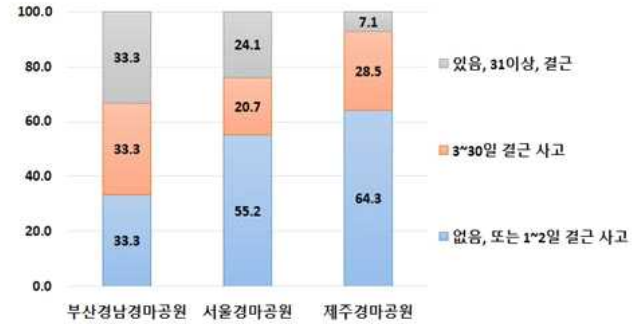
1. 마필관리사의 경우, 산재보상처리 건수이며, 기수의 경우, 민간재해보험 처리 건수 - 실제 보고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많음
2. 기수의 재해율이 월등히 높음
3. 마필 관리사의 경우 00년 후반부터 부산 경마공원의 재해율이 높음.
기수의 경우에도 부산 경마공원의 재해율이 높음

1. 경마종사자 재해 현황 - 2019년 조사결과

< 조사 참여 기수 재해율 >



< 지역별 기수 재해율 >



< 지역별 기수 병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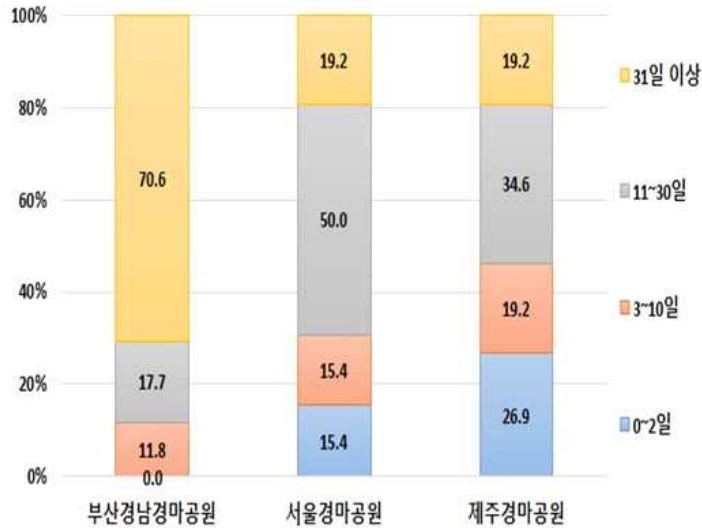


< 마사회 말산업연구소, 2018 >

기수	말관리사
32(66.7)	241(44.6)
16(33.3)	299(55.4)

1. 기수의 건강수준 - 2019년 조사결과

< 몸이 아픈데도 출석주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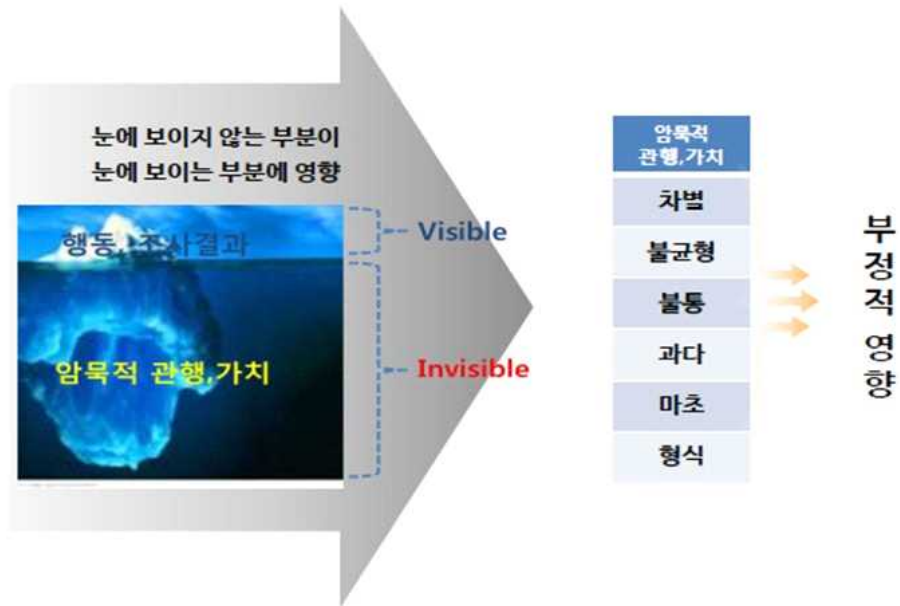
< 근골격계 증상 호소 >

영역	기수		말관리사	
	남	여	남	여
목	19 (45.2)	3 (50.0)	174 (35.5)	
어깨	25 (59.5)	4 (66.7)	202 (41.2)	
팔꿈치/손목/손	19 (45.2)	4 (66.7)	195 (39.8)	
상지	30 (71.4)	5 (83.3)	272 (55.5)	
허리	27 (64.3)	5 (83.3)	267 (54.5)	
다리/무릎/발	16 (38.1)	3 (50.0)	186 (38.0)	
전신	34 (81.0)	6 (100.0)	340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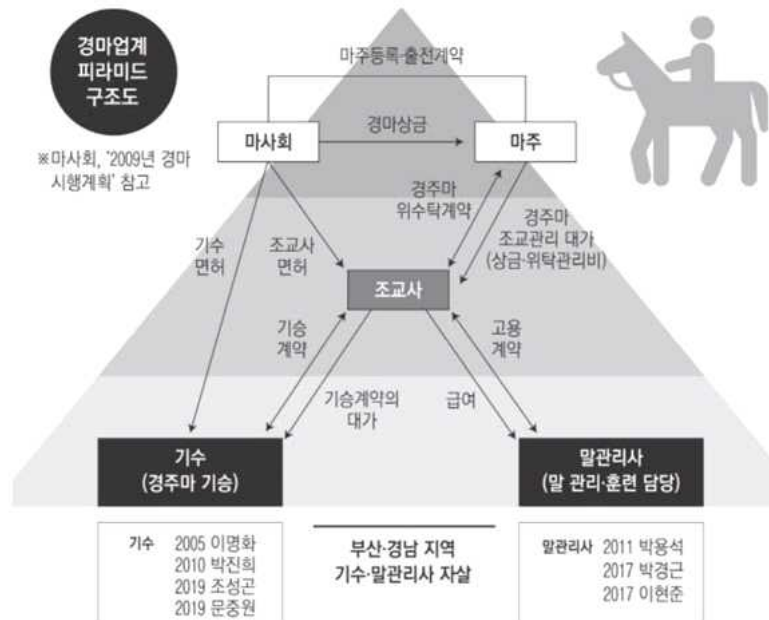
168cm, 48kg 이하의 신체 조건을 가진 기수, 500kg이상의 60km속도의 마필을 제어 경주 및 조교가 1년에 약1,000회 가까이 이루어짐.

1. 조직진단 _ 2018년 마사회 말산업연구소

경마산업 종사자 조직분야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암묵적인 관행, 가치가 종사자별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마 관계자들은 예민하고, 거친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채이고, 밧히는 사고는 필연적이라고 한다.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재해율의 근본 원인은 관리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마사회, 투자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마주와 조교사, 불공정한 조교사와 마필관리사/기수의 고용 및 계약 관계에 있다.



경향신문, 12/11

2. 경마종사자 재해 내용과 원인

1) 마주와 조교사의 이익을 위한 비용의 압박 – 부족한 인력 운영

재해 발생 경위	마방 안쪽에서 혼자서 마분을 수거하는 도중 마필이 갑자기 얼굴을 참
재해 종류	마필에 채임
마필 특성	신마
재해 부위와 종류	부위: 얼굴(아랫입술과 턱 사이)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작업자 및 수레 이동에 따른 소음 발생 - 마필을 밖으로 빼고 청소하여야 하나 시간이 부족해 그대로 방치하고 작업을 수행함 - 2인 1조로 1인이 마필을 잡고, 1인이 청소를 해야 하지만 혼자서 작업을 수행함

-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량 증가시, 업무 속도가 빨라지고, 안전 절차를 따를 수 없음.
- 마필관리사 1인당 마필 관리두수가 많을수록 재해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2. 경마종사자 재해 내용과 원인

2) 마주와 조교사의 이익을 위한 시간의 압박 – 조교기간의 단축

재해 발생 경위	기승 조교 중 속력을 높여 결승전 통과 후 마필의 다리에 힘이 풀려 마필과 같이 넘어짐.
마필 특성	신마(1~2경주 출전)
재해 부위와 종류	부위: 어깨, 종류: 골절
마필 요인	① 충분한 조교로 신체 능력이 완속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경주 출전하여 다리에 힘이 풀려 같이 넘어짐.

- 외산마의 경우 **입사 후 경주 출전까지의 기간이 국산마보다 경주 출전까지 짧음**
- 새로운 환경과 조교 과정에 적응하는 일정 기간이 필요, 빠른 출전을 위해 조교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적응이 이루어지 않은 상태에서 **조교가 이루어져 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

<산지별 재해 발생률 >



<산지별 경주출전까지 조교 기간 >



2. 경마종사자 재해 내용과 원인

3) 불안정한 상황에서 작업의 강요 – 조교사로 부터 기회를 부여 받는 기수

재해 발생 경위	경주 중 기승 마필의 다리 골절됨. 4코너 돌아 직선주로에서 마필의 다리가 골절되어 인마 전도됨. 마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경주 띄는 것을 염려 하였는데, 취소시키는 경우에 해당 마방에 미안하고, 본인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한번 돌면 되지 뭐라는 생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승 조교 중에는 많은 마필이 몰려 짧은 기간안에 조교가 이루어지기에 일정시간 이후에는 주로 표면의 손상이 많고, 불규칙하게 됨. 이러한 주로에서는 기승 조교시에 마필의 발에 걸리는 부하가 불규칙한 주로의 표면 때문에 비정상적인 각도로 제공될 수 있음 ① 평소 반복적인 조교로 다리의 미세골절이 있었으며, 조교중 악화되어 다리의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① 조교 및 경주 전 마필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교 및 출전 여부 결정에 있어서 기수의 의견 반영이 적거나, 신규 기수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함
재해 발생 경위	발주 훈련 중 출발대 진입 전에 악벽을 부리면서 낙마함
마필 특성	악벽마, 다른 마방에 소속된 마필
마필 요인	악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천천히 반복적인 충분한 조교가 필요함
인적 요인	조교가 없어 다른 마방에 조교할 마필을 부탁 중 상기 마필에 대한 조교를 받음. 악벽이 있는 줄 알았으나, 기승 조교를 실시하였음.

2. 경마종사자 재해 내용과 원인

4) 낙후된 훈련시설 - 마사회 안전 시설 투자 지연

재해 발생 경위	반구보 조교로 내측 주로에서 기승 조교 중 결승선을 200m남겨둔 지점에서 습보로 옆을 지나가던 마필에 놀라 요동을 부렸고, 이를 제어하려다 채임.
요인	① 새벽에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마필이 나와서 제한된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하기에 다양한 마필이 한 주로(공간)에서 훈련을 함. 다양한 속도로 훈련하는 말이 같은 공간에서 훈련을 받음. 신마와 구마의 뚜렷한 구분이 없음.

- 지역별로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경주로 규모에서 시행하는 조교 마필의 규모를 고려
공간대비 훈련량을 고려한 밀도가 높은 경우에 불필요한 마필간의 자극/충돌이 재해 증가



2. 경마종사자 재해 내용과 원인

5) 순치조교와 경주마 조교의 미분리

○ 일본의 경우는 순치조교(육성목장)와 경주마조교(트레이닝센터)로 조교과정이 분리되어 있음. 1969년 설립된 릿또 트레이닝센터의 경우 대부분 육성목장에서 완전히 순치가 된 경주마들을 관리하고 조교 하고 있음. 마필관리사 1명이 2마리의 마필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의 경우 미순치된 말에 무리한 경주마 조교 실시 중 사고가 가장 많음. 순치조교는 말 농장, 육성목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마산업의 확장으로 무리하게 순치/경주마 조교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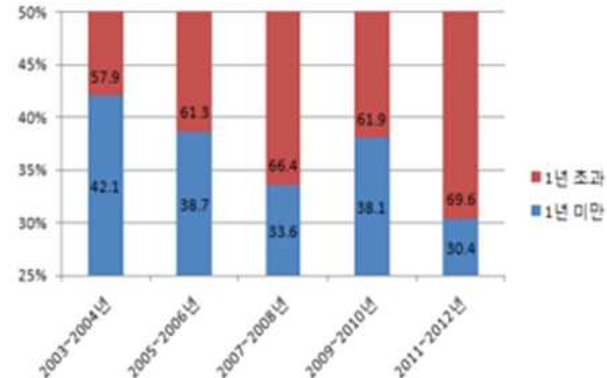
○ 마주는 소유 말이 경주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순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는 경우 마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조교사 및 마필관리사, 기수의 능력이 저평가되는 잦대가 됨. 무리하게 순치과정이 진행됨으로써 재해가 빈발하고, 불필요한 마필의 악벽이 발생한다고 함.

2. 경마종사자 재해 내용과 원인

5) 순치조교와 경주마 조교의 미분리

재해 발생 경위	-야외 윗 마장에서 기승 훈련을 하는 도중 기립 요동하며 돌진하여 안장이 돌아가면서 낙마한 뒤 마필에 채임. 50m 정도 이동하면서 요동을 치는데 계속 요동을 제어 함
마필 특성	8개월 신마(망아지), 예민하고 요동이 심함
요인	- 훈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함. 다양한 마필이 한 마장(공간)에서 훈련을 함 - 마필이 요동 칠 때 일찍 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감소시 켜야 하는데 요동에 의해 하마하면 향후 에도 마필이 계속 요동침. 마필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훈련 의식 때문에 계속 기승

- 2010년 이후 활성화된 순치조교와 관련됨. 순치조교 강화 시점을 기준으로 재해 감소 순치 조교마의 비율의 변화와 신마 재해 감소 변화는 유사한 경향이 관찰됨.



2. 경마종사자 재해 내용과 원인

6) 제도의 불완전 운영

○ 재해의 조별 분포를 보면 **조별 재해 건수**의 큰 차이가 관찰됨.

<서울>

소속조	재해건수	소속조	재해건수	소속조	재해건수
42조	12	11조	5	17조	3
21조	11	15조	5	24조	3
37조	10	2조	5	28조	3
49조	10	23조	5	32조	3
1조	8	27조	5	36조	3
22조	8	46조	5	38조	3
29조	8	47조	5	39조	3
3조	8	13조	4	6조	3
30조	8	14조	4	7조	3
35조	8	31조	4	16조	2
43조	8	34조	4	25조	2
53조	8	40조	4	48조	2
12조	7	41조	4	54조	2
18조	7	44조	4	8조	2
19조	7	50조	4	10조	1
26조	7	51조	4		
4조	7	9조	4		
33조	6				
45조	6				
5조	6				
52조	6				

<부산>

소속조	재해건수	소속조	재해건수	소속조	재해건수
13조	10	11조	5	15조	3
19조	10	14조	5	16조	3
21조	10	17조	5	25조	3
3조	9	18조	5	28조	3
10조	8	22조	5	6조	3
29조	8	24조	5	27조	2
20조	7	26조	5	31조	2
23조	7	9조	5	32조	1
30조	7	2조	4	33조	1
5조	7	4조	4		

소속조	재해건수	소속조	재해건수	소속조	재해건수
20조	10	3조	3	2조	1
1조	9	8조	3	6조	1
5조	5	12조	3	9조	1
19조	5	15조	3	11조	1
10조	4	4조	2	14조	1
13조	4	18조	2	21조	1
16조	4				
17조	4				

<제주>

○ 조별 재해 발생 수준 차이가 뚜렷함에도 마사회의 관리적 역할 수행 미비

산재발생건수를 마방 대부 기준으로 사용하는 소극적 관리에 그침. 역으로 산재발생을 감추는 부작용 초래/

3. 예방 방안

- 우선순위에 따라 재해 예방방안을 기술하고, 마사회, 조교사협회, 노동조합 협의 예방방안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함. 제도정비/시설환경개선이 첫번째 과제임.



◆ 제도정비

- 1.육성조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유지 및 강화
- 2.육성조교 시설 지원 강화
- 3.육성조교시험 평가 내실화 및 강화
- 4.제주의 경우 외부 조교 활성화
- 5.경마장 입사 순차 기준 강화
- 6.제주의 경우 한라마에 대한 합리적인 체구 기준 재선정
- 7.업무량 평가 조사를 통해 종사자 1인당 적정 관리 마필두수 평가
- 8.마필관리사의 경우 직책에 따른 업무량 평가 후 인원 확보
- 9.안전보호구 개선 지원
- 10.조교승인/조교보 시험시 안전관련 평가 강화
- 11.기수 면허 부여시 안전관련 평가 강화

3. 예방 방안



◆ 시설환경개선

1. 경주로 외 조교 주로 확보
2. 경주로 외 조교 공간의 확충 필요
3. 장기적인 계획 하에 경주로 노면 개선/점검/보수
4. 시설에 대한 진출입로 및 이동공간에서의 공간적 분리

◆ 안전체계

1. 경마 중사 관계자 재해대책협의회 운영
2. 노사가 참여 시설 점검/개선 TF 구성
3. 기수/마필관리사의 조교 사전/사후 경주로 답사
4. 마필관리사/기수의 마필 상태 평가 의견 반영한 조교/경주 조정

◆ 일상활동 강화

1.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시설 점검
2. 작업자 안전관련 작업절차 관리 감독 강화
3.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마사회 감독 강화
4. 마필의 상태, 능력에 따른 조교 실시
5. 업무 표준 매뉴얼 제작
6. 안전교육의 내실화

4. 각 주체의 책임과 역할 규정

- 경마 산업의 주요 주체인 마사회와 조교사 협회, 기수협회, 그리고 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은 안전보건에 있어서도 주요 주체이며, **주체별 안전보건 영역에서 수행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시**. 마사회는 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한 필수 조건인 제도정비와 시설 및 환경개선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시행체임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마사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마필관리사노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 ○ 정기적 재해대책협의회 개최 ○ 각 주체의 의견 조율 ○ 안전보건관련 제도 정비 ○ 시설 및 환경 개선 장기 계획 ○ 면허 부여시 안전 항목 평가 ○ 일상 안전관리 감독 실시 ○ 안전 수칙 위반 종사자, 재해를 다발 마방에 페널티 ○ 감시체계 유지 관리 감독 및 수집 정보 분석 및 통계 생산 ○ 안전보건 관련 용역 사업 수행 ○ 안전보건 캠페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제기와 예방 방안 제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조교 수행 능력 강화 계획 ○ 마필관리사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관리 감독 ○ 조교 문화 개선 ○ 보호구 및 안전장구 개선/지원 ○ 조교 주로 및 시설 답사 ○ 재해다발 마방 자율관리 ○ 안전 교육 강화 계획 및 실천 ○ 마필관리사 의료 지원 ○ 1인당 적정 마필관리두수 선정 ○ 감시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제기와 예방 방안 제시 ○ 기수의 안전수칙 준수 및 보호구 착용 관리 감독 ○ 조교 주로 및 시설 답사 ○ 재해다발 재해자 자율 관리 ○ 안전 관련 에티켓 준수를 위한 자율 관리 감독 ○ 안전 교육 강화 계획 및 실천 ○ 기수 근골격계 부담 감소 및 질환 예방을 위한 의료 지원 ○ 감시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 및 감시자 역할 ○ 조교 주로 및 시설 답사 ○ 재해다발 재해자 자율 관리 ○ 안전 관련 에티켓 준수를 위한 자율 관리 감독 ○ 마필관리사 안전 교육에 성실한 이행

5. 기수, 마필관리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기수면허갱신제도 개선) 마사회는 기수 면허갱신제도 개선을 통해 기수들을 통제하고 있음. 기수들은 조교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경주 출전이 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기수들이 조교사의 부당지시를 어길 수 없는 제도적 환경임.
 - 경주 기승 횟수, 경기 성적에 따라 면허갱신하는 규정 폐기
 - 경마시행규정 및 경마시행세칙 개정
- (표준기승계약서 작성) 조교사와 기수간 맺는 기승계약은 오로지 기수의 의무 내용만 있는 불평등 계약. 기수의 권리를 명시한 기승계약서 체결을 의무화 해야 함
- (적정생계비 보장) 기수들이 아파도 말을 탈 수밖에 없는 것은 경주 출전을 포함한 기승을 하지 않으면 적정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 서울처럼 고정 수입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 (마필관리사 고용안정) 한국마사회는 2017년 국회, 정부, 공공운수노조와 맺은 합의사항(조교사협회에서 마필관리사 집단고용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부산경남경마공원 모든 조교사들이 하나의 조교사협회에 가입하여 마필관리사를 집단고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기수, 마필관리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표 125] 국가별 기수 현황 비교

기수	한국	미국	영국	호주
고용관계	조교사협회와 기승계약	조교사와 기승계약	조교사(단체)와 기승계약	조교사(단체)와 기승계약
수입내역	기승료, 상금	기승료, 상금	기승료, 상금	기승료, 상금
근무요일	-	-	-	-
근무일수	-	-	-	-
근무시간	-	-	-	-
야간근무	유	유	유	유
복지	무	주별 조교사연합(INHBPA, NYTHA, MTHA 등)과 기수연합(DJA 등)이 자격 있는 회원 또는 회원이 계약한 기수와 직원에게 보험, 연금, 의료서비스 등 복지 제공	연금, 기수연합과 주정부 경마 위원회가 정신건강 등 상담프로그램 제공, 기수연합이 보험 제공(Public liability,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연금, 기수연합과 주정부 경마 위원회가 정신건강 등 상담프로그램 제공, 기수연합이 보험 제공(Public liability, Personal accident insurance)
휴가	-	-	-	-
소속	개인사업자(기수협회)	개인	개인	개인
자격	기수면허(한국마사회발부)	기수 면허(주정부 경마위원회 발부)	기수 면허(주정부 경마위원회 발부)	기수 면허(주정부 경마위원회 발부)
직무내용	경마대회 출전	경마대회 출전	경마대회 출전	경마대회 출전

5. 기수, 마필관리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마필 관리사 등 경마산업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함(평균 주당근로시간이 55.3시간, 연장 및 휴무수당 중 평균 54.9%만 지급,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 등)
- ✓ 호주는 근로기준법이 경마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주 38시간, 추가 수당 필수, 1년에 4주 간 연차 휴가 등), 영국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하여 경마산업에 대한 자세한 근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주 40~45시간, 최대 48시간 근무 가능, 고용 첫해 5.6주의 연차 휴가 등). 특히 영국은 경마산업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조언해주는 단체(nars)가 존재함
- ✓ 영국은 기수를 비롯한 경마 참가자들의 건강과 의학적 보호에 대한 규정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호주도 경마환경의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토론문

마사회의

사용자 책임과 사회적 문제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마사회의 사용자책임과 사회적 문제

김수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산업안전 관련 사용자 책임의 소멸

가. 경마 산업의 산업안전 문제

- 안전보건 특성에 관한 제2발제에서 잘 나타나듯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상황임
- 산재발생을 미신고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한국마사회가 꼽혀온 점, 기수들의 재해는 민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해 정도는 더욱 심각할 것임

□ 산재건수를 마방 평가 시 반영함에 따라 **산재은폐 만연**

°5년간('13~'17년) 응급센터를 통해 후송된 노동자(107명)에 대한 조사 총 62건 산재미보고건 적발 (기 산재처리건 83건 대비 74.6%)

- 2017. 9. 20.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한국마사회[부산경남] 특별감독 결과발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16개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다. 528건의 산재발생건 중 14%(74건)만 신고했다. 한국마사회는 22건 중 10건, 근로복지공단은 16건 중 3건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6. 10. 13. 매일노동뉴스 보도

“산재발생해도 신고 안 하는 국가기관들”

나. 마주제도 변경과 사용자 책임의 소멸

- 단일마주제의 경우(1993년 이전), 한국마사회는 노동자들과 근로관계를 맺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계약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함
- 사용자의 법령상·계약상 산업안전 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사용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경우 3년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를 참여케 하여 유해요인을 조사할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제1항 내지 제3항)
-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동 규칙 제659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동 규칙 제661조)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무(동 규칙 제662조)

■ 산업안전 관련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의무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 1992년 경마비리를 겪은 한국마사회는 공정경마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개인 마주제 전면 실시를 제시함. 1993년 8월 개인마주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마 산업의 고용관계에는 전면적 변화가 촉발됨¹⁾
- 그러나 개인마주제 도입과 공정경마의 연관관계는 의문임. 또한 개인마주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개인마주의 등록(법 제11조)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고, 조교사나 기수 및 마필관리사와 같은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변화되는 고용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 현행 한국마사회법을 보더라도 개인마주의 등록 관련 규정은 법률로서 구체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교사·기수의 등록 관련 규정은 법률상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마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관계를 제한하는 침익적 법률이 지켜야 할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소지가 있음.
- 마주와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의 차이는 한국마사회법이 고용관계에 대해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마주제 변경에 관한 마사회법의 정비는 경마비리보다 앞선 1990. 8. 1. 법률 제425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시작한 구법부터임. 이때 마주의 등록관련 규정(법 제11조)과 조교사 및 기수의 면허 관련 규정(법 제14조)을 우선 마련한 뒤, 준비과정을 거쳐 개인마주 소유 경주마에 의한 첫 경주가 시행된 1993년 8월 14일을 실질적인 개인마주제 전환시점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단일마주제의 변경은 미리 준비되었던 것이고 92년 경마비리는 한국마사회가 개인마주제 전환의 정도에 있어 “전면적 개인마주제”를 채택하게 된 근거였을 것으로 추정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7.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8. 제3항제3호·제5호,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마주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임원(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③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2.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법인으로 그 임원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 때에 14일 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3. 조교사·기수 또는 말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4.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경마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제14조(조교사·기수의 면허 등) ①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려는 자는 조교사 면허를, 경주마에 기승하려는 자는 기수 면허를 마사회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경주마의 장제(裝蹄)를 하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요건·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 한편 「말산업 육성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의무로서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말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법 제5조), 동법에서의 정의 규정 중 말 조련사에 관해서는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2017. 9. 고용노동부의 한국마사회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재은 폐를 유도하는 마사대부 기준 개선 및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계획 수립을 권고하였고 마사회는 2019. 10. 내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동 규정의 적용범위는 사내 수급근로자까지로 정하고 있고(제2조), 말 조교, 관리, 기승에 관한 사고 방지책은 전무하며 매우 일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답습하고 있는 수준임.
- 결국 마사회는 개인마주제 도입 이후 기존 직원이었던 조교사, 기수 및 말관리사와의 관계를 모두 외주화한 뒤 사용자 책임 전반을 회피하고 있음

2. 고용구조 문제

가.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권력 구조와 의무 없는 권한행사

- 제1발제에서 지적하듯 조교사와 기수의 계약서에서 조교사는 권한을 행사하고 기수는 일방적인 의무를 갖는 편면적 권리관계가 나타남

- 이는 마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 마사회가 제정·시행하는 경마시행규정에는 조교사와 기수에 대한 제재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기수와 조교사에 대한 견책과 과태금 징수는 물론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음
- 형식적 근로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마사회에게 아무런 책임을 두지 않는 반면, 면허의 취득은 마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마사회에 편면적인 징계권한이 부여되고 있으며 면허의 갱신이나 취소까지 가능한 불평등한 권리관계가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입법의 모순이며 발제자 역시 이 점을 타당하게 지적하고 있음
- 마사회가 일방적인 면허권과 징계권을 지니고 있는 점에 더하여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소득(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역시 마사회가 제정·시행하는 경마시행규정을 통해 결정되는 점을 볼 때, 마사회는 기수 및 말관리사에 대한 고용관계의 핵심이 되는 임금 결정권과 징계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용관계에 따르는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것임

나. 고용관계의 실질과 근로자성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⑪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고 하고 있음.

- 위 판결에서 제시된 사용종속관계의 지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법리가 되고 있는데, 이상의 기준은 종속노동의 개념을 축소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가 등장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음
- 특히 ③ 상당한 지휘감독, ④ 근무시간과 장소에의 구속, ⑦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관련 지표들은 중층적 고용관계인 마사회와 기수 및 말관리사 간 관계에서 간명하게 드러나기 어려울 것임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범위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해석되고 있음.
- 첫째, 노동조합법의 목적이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보다 더 넓은 의미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
- 때문에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형식적 평등에 가려져 있는 실질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바, 실질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노동관계에서는 언제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함
- 둘째, 법문의 정의부터 다름. 노조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있고(법 제2조 제1호), 이 규정은 임금근로자 외의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음. 따라서 1인 사업자의 형식으로 특정 사업주에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소속되어 이하는 준종속근로자가 얻는 수입은 임금에 준하는 수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짐.
- 이러한 해석에 따라 판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발제자가 지적하고 있듯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원청사업주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

동행위를 시정하도록 판결하였음(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 두8881 판결 등)

- 더 나아가 최근의 판례는 지배·개입 사안뿐 아니라 단체교섭의무에 관하여도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²⁾
- 원청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가령 임금의 경우, 개별 하청근로자 임금이 원청업체의 하청임금정책에 좌우되는 정도,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임금정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배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이 긍정되는 이상 임금 항목에 관한 원청의 교섭책임이 긍정될 수 있을 것임
- 노동조합 활동장소의 제공에 관하여도 원청 사업자의 시설관리권이 전면적으로 미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간은 동시에 노동조합의 활동공간이기도 하기에 구체적인 이익형량 없이 그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으며 일정한 공간사용에 대한 수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³⁾

다. 개선방향

- 기수와 말관리사 등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고용구조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별적 관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이를 기초로 고용관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지는 보다 꼼꼼한 검토를 요할 것임
- 반면 마사회가 행사하는 권한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고 고용관계의 핵심 요소를 모두 포섭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범위의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731, 대전지방법원 2011카합782 결정 등

3) 부산동부지방법원 2008고합97,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4782 판결 등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상, 마사회의 지배력 범위에
조응하는 단체교섭의무 부담은 보다 간명한 측면이 존재

- 기수와 말관리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
야 한다는 결론에 동의함

3. 권리의 주체로서 마주 앉아야 할 때

- 마사회를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중층적 고용관계는 마사회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변화임. 그 과정에서 마주와 달리 노동자는 권리의 주
체로 고려되지 못하였음
- 마사회법 등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및 규정들, 나아가 조교사와의
계약서에 이르기까지 편면적이고 일방적인 권리의무관계는 제도 설
계 과정에서 노동의 권리가 누락된 결과임
- 현재의 고용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
마 산업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마사회와 마주 앉을 수 있어야
할 것임.

토론문

위험의 외주화의 또 다른 버전 : 위장된 자영업과 독점 그리고 도박의 교차점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 김용균특조위 조사위원)

‘위험의 외주화’의 또 다른 판본

: 위장된 자영업과 독점, 그리고 도박의 교차점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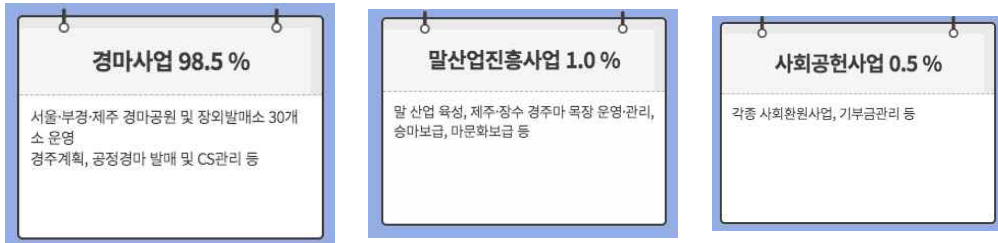
한국마사회의 ‘위장된 공공성’과 경마기수의 ‘위장된 자영업’

“마사회 소속 기수, 말관리사 7명이 마사회의 비리와 다단계 착취를 폭로하며 목숨을 끊었다.” 이 간명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다.

첫째, 경마 기수는 스포츠 선수인가? 노동자인가?

물론 스포츠 선수이자 노동자일 수 있는데, 문제는 경마기수는 스포츠 선수로 인식되거나 노동자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는 한국마사회라는 독점적, 다단계 착취구조가 존재한다.

둘째, 마사회는 왜 공공성을 담보한 공기업인가? 가령 물, 가스, 전기 철도는 이들 산업이 공적인 것이어야 하는지가 직관적으로 이해된다. 모두의 삶을 이어나가는데 필수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마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국마사회가 왜 공공기관으로 존재해왔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어렵다. 마사회는 1차, 2차, 3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 말산업구조라는 홍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경마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사회의 공공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우선 프로스포츠 선수의 스포츠에 대한 오래된 통념과 ‘자영업자’ 신분이 맞물려 이들의 노동자성을 사회적으로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 당시 프로야구선수협회가 결성되었는데, 애초에 선수노조를 결성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자성 인정여부는 이 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2009년 이전에도 1983년, 2000년에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야구선수들의 노력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의 이런 사전에 비해 미국의 메이저리그, 일본의 프로야구에도 선수노조가 있고, NBA나 유럽의 축구선수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권혁 :240-241)

스포츠 활동이 자신의 인격실현과 희열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자기목적성’을 본래적으로 갖고 있다는 통념은 전 세계적인 올림픽을 통해 재생산되어 왔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라는 ‘스포츠의 상업화’는 스포츠 선수를 ‘직업인’으로 위치 짓는다.

야구선수들이 1980년대부터 끊임없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이유는 스포츠가 상업화되면서 스포츠 활동자체가 심각한 신체적 상해위험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작업적 스포츠 활동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구단에 사실적인 종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성취를 위해 자신의 신체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스포츠의 ‘자기목적성’이 우선할 수 없다.

마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의 경우는 어떨까?

이들의 임금은 임금이라 불리지 않고 상금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불리고 지급된다. 기수의 상금책정은 마사회 소속 노동자들의 연봉책정 방식이나 스포츠 분야의 상금이나 연봉책정 방식과도 다르다. 마사회가 기수의 상금(임금)을 책정할 때 매출 원가를 산출한 뒤 그 금액을 상금으로 책정해 마주(72.3%), 조교사(8.1%), 기수(4.8%), 관리사(14.6%)로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⁴⁾. 즉 경마대회에 출전해 1위에서 5위안에 들어갔을 경우 상금을 차등으로 타게 되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구조에서는 맞지 않는 방식이다.

<표> 국가별 경마장 수 및 경주 수

국가	경마장 수	경주 수
호주	479개	19,921 경주
미국	175개	53,403 경주
영국	59개	5,241 경주
일본	32개	17,886 경주
한국	3개	1,661 경주

*국제경마연맹 통계자료(2004), 신승호(2009)에서 재인용.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의 경우 모든 성수들에 대한 프리기수

4) '마사회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가 자체 분석한 바, 전체 상금총액 중 마주,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에 돌아가는 비중을 총액근거로 계산한 것이다. 위의 비율은 부산경남 경마장의 경우이다. 경마기수의 상금 종류는 착순상금, 출주장려금, 경주보상금, 경주 협력금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지며, 각 부분에 대한 비율 책정은 각각 상이하다(신승호).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대략 마주에게 상금의 70-80% 가량이 돌아가고, 조교사, 기수, 관리사가 각각 5-10% 사이의 배분비율로 상금을 분배받는다. 여기에 덧붙여 부산경남의 경우 기수의 상금 배분비율은 조교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제도와 많은 경마장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선수들 개개인이 경기에 대한 자유로운 출전과 많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마사회의 독점적 경기운영권하에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주 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경주기수들은 마사회 소속일 수 밖에 없는 종속적 구조를 만들면서 임금구조는 상금에 의존하도록 설계해왔다.

이러한 착취형태는 내부의 편차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데, 마사회가 설계한 기수들의 상금(임금)구조를 살펴보면 1) 여타 다른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과 비교해 현저히 낮게 설계되었다는 점 2) 선진경마 시행국과 비교해 경마 상금의 책정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선진경마 시행국의 경우 3~5% 선에서 경마상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 매출액 5조원의 3%만 책정해도 1500억 수준이 됨. 그러나 당시 경마상금은 절반인 800억 수준에 그침) 3) 경마와 함께 겜블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정, 경륜과 상금 배분구조를 살펴보면, 경정과 경륜의 경우 모든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상금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지만, 경마의 경우 1-5등만 상금이 주어지고, 6등~12등의 선수들은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비경쟁성 상급만 지급) 즉 경기에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상위 5명(23.7%)만이 임금으로서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겜블산업 내에서도 마사회의 상금구조는 극단적인 차등배분의 성격을 갖는다.

<표> 상금 지급 분배 현황

구분	출전선수	상금 지급순위
경정	6	1~5위

경륜	7	1~7위
경마	6~14	1~5위

*신승호(2009)에서 재인용

마사회가 설계한 상금구조는 기수로 하여금 경기출전과 순위권(1~5위) 안에 들기 위하여 매우 극단적인 착취구조를 감내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마사회의 경기 독점권은 다른 프로선수들 처럼 다른 곳으로 이적하거나 보다 나은 조건의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애초에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착취구조가 오랜기간 유지되어 왔다.

또 하나, 경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스포츠경기업에 속하지만 현재 농림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회의 경기시행 규칙방식과 상금구조가 매우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스포츠 선수보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이 형성되어 왔다.

그렇다면 마사회가 기수와 맺는 계약은 다른 스포츠 선수들과 구단측과의 계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통상 스포츠구단에 소속된 선수들과 구단 측과의 계약은 대체로 “선수 자신이 갖고 있는 스포츠 재능을 구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다”는 사실을 주된 계약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 선수가 승리를 해야한다거나 경제적 결과물을 창출해 내야 할 의무를 계약상 부담하는 주체가 아님을 보여준다.(권혁 :249)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선수는 구단에 대해 일정한 노동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사회는 구단주와 감독의 역할인 마주와 조교사를 아웃소싱하면서 말관리사와 기수를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게 만들었다. 그리고 형식상 마사회는 경기시행의 주체로 남는 식으로 만들면서 ‘위장된 자영업’의 형태로 관련 역할들을 외주화 하였다. 아웃소싱의 가장 나쁜 형

태라고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형식을 도입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마라는 도박산업의 특성이 겹쳐져 스포츠에서 예상되는 ‘경쟁’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쟁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기수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수는 경주 출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말의 훈련을 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로 이어지는 위장된 자영업 형태와 도박산업 그리고 독점구조가 교차하면서 경기결과에 따른 상금이 임금과 노동자성을 지우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의 극단적인 사례 : 기수들이 위험하다.

통상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 업무가 외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문중원 기수를 포함해 7명의 기수와 말관리사의 잇따른 자살은 위험의 외주화가 의미하는 위험이 단지 물리적인 위험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조건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호장치도 없을 때, 그리고 외주화가 가져오는 폐쇄적, 비가시적인 노동환경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1) 극단적으로 높은 산업 재해율

2006년 기준 부상발생 건수는 123건, 총 입원일수는 1,767이며, 경기 중 부상은 42건(33.3%), 새벽노조 부상 74건(60.2%)으로 경주에서 발생사고가 93.5%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신승호 :32). 또한 서울경마장기수협회에서 2007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마기수의 재해율은 탄광노동자의 11.5배, 말관리사의 11.2배라는 심각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표〉 직업별 산업재해율 비교(서울경마장 기수협회(2007))

구분	경마기수	탄광노동자	경륜선수	관리사
재해율	163%	14.2%	25.8%	14.5%
비교	-	11.5배	6.3배	11.2배

한국마사회 측의 연구보고서(2014)에 따르면 기수의 평균재해율은 30%로 관리사의 3배, 타산업 평균재해율(0.6~0.7%)에 비해 5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울 경마장의 재해율은 2011년을 기준으로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부산경남 경마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선진경마’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부경 경마장의 재해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기수 재해자 수(재해율)

	서울 경마장 (54.6명 정원기준)	부경 경마장 (35.6명 정원기준)	제주 경마장
2009년	32명(58%)	27명(75%)	7명
2010년	31명(57%)	11명(31%)	13명
2011년	16명(29%)	17명(47%)	11명
2012년	16명(29%)	14명(39%)	12명
평균 재해율	43%	48%	

*2014년 보고서를 토대로 재산출함.

이러한 재해율은 특별히 경마가 위험해서 라기 보다는 한국적 경마산업의 독점과 도박, 그리고 외주화 정책이 맞물려 위험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경마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연구(왕순주, 2002)에 따르면 경마의 위험은 “다른 종류의 운동 경기와 달리 경마 자체를 즐

긴다기 보다는 돈을 걸어 따려는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과열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수들과 말에게도 가해지는 정신적 압박감이 어느 다른 스포츠 못지 않게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경마산업의 위험이 기수(50%)와 말관리사(42.5%)에 집중(92.5%)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은 종종 기수들의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1985년 10월 14일 서대위 기수 경주중 낙마 사망
1991년 11월 01일 김태성 기수 경주중 낙마 사망
1992년 11월 07일 김종온 기수 경주중 낙마 하반신 마비(1급 장애)
1996년 06월 30일 이준희 기수 경주중 낙마 사망
2004년 08월 04일 유훈 기수 경주중 낙마 사망
2007년 08월 11일 임대규 기수 경주중 낙마 사망

2) 공정한 경쟁, 스포츠다운 경쟁을 훼손하는 도박성 경쟁에 따른 연쇄자살

2005년 이명희(26) 기수
2010년 3월 박진희(28) 기수
2011년 11월 박용성 말관리사
2017년 5월 박경근 말관리사
2017년 8월 이현준 말관리사
2019년 7월 조성관 기수
2019년 12월 문중원 기수

이명희와 박진희라는 여성 기수들이 유서를 남기고 죽었을 때, 당시 마사회에서는 “경쟁성 상금을 서울보다 많이 높였다. 경쟁성 상금이 없으

면 경마가 죽는다. 그럼 누가 말을 열심히 타려고 하겠는가.”고 말했다.(주간동아, 2010.4.8.) 당시 박진희 기수의 유서를 보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 “철없이 혼자 견뎌내고 있는 나를 또 라이 같은 X라며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조교사가 왜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사람의 상처를 주는 건지도...” 라며 조교사의 갑질과 연쇄적인 자살시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후 연속적인 죽음이 반복되고 있으며, 조교사의 폭언과 인격모독 등 가혹한 인권유린이 문중원 기수의 유서에 까지 이어져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권유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외주화된 고용형태와, 마사회의 독점구조, 그리고 도박이라는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마사회는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는 마사회 자체가 이러한 위험을 생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마기수들의 직무스트레스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2011)에 따르면 기수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경쟁, 체중부담, 의사소통, 관중, 생활, 동료비교, 부상스트레스 총 7개 요인이 있으며, 다면적 고용구조 상에서 발생하는 조교사의 인격적 무시, 욕설, 위험한 작전지시에 따른 부담감 등이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경마에 참여하는 많은 관중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부정적 인식(관중), 악벽과 낙마의 두려움, 총돌의 근심걱정, 몸이 아픈데 경마할 때 등(부상) 등의 요인들이 모두 조교사와 마주와의 관계라는 다단계 착취구조, 도박성 경주에 따른 압박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경쟁성 상금이 없으면 경마가 죽는다.”며 말관리사와 기수들의 연쇄적인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사회, 공공성인가 독점인가

마사회의 매출액은 7조8천억원이 넘는다. 당기순이익이 2200억원이 넘는 공기업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공기업이다. 이 중 16%(1조8천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마사회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금납부는 마사회의 존재이유일 뿐 그것이 마사회의 공공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마사회는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연간 110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

말관리사와 기수들의 죽음의 원인에 마사회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가 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지나치게 경마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 말산업 전반을 육성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또한 외주화로 인해 관리사와 기수들은 '위장된 자영업자'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배제되었으며, 기수의 경우 스포츠 선수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 즉 마사회의 독점이 기수를 스포츠 선수로도, 노동자로도 인식할 수 없게 만들면서, 일반 노동자와 스포츠 선수들의 위험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마사회의 공공성은 실종되었고, 독점의 해악만 남아있다. 공공성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구축과 발전과정에서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공공성의 가치를 증진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 면에서 마사회는 기업의 내부와 기업의 외부, 즉 사회적인 면 둘 다에서 공공성을 무력화하고 있다. 안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유린과 죽음을 방기하고 있으며, 밖에서는 경마에 대한 사행성과 중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마사회를 공기업으로 존속시켜야 하는지도 우리사회가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사회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에 아무런 대책

을 내놓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미 공공성이 아니라 독점의 권력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면 에 나서지 않고 마주와 조교사 협회 등 그들이 만든 위장된 책임주체 들을 앞세우고 있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더더욱 마사회의 공공성은 허 구가 아닌지를 진지하게 따져볼 일이다.

참고문헌.

권혁(2012),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법학연구」 53(4), 237-261.

신승호(2008), ‘경마기수 상금지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스포츠과학연구 소논총」 27권0호 : 31-45.

왕순주(2002), ‘경마와 관련된 손상의 고찰’, 「대한스포츠의학회지」 20(2).

윤재백·박병훈·나유나(2011), ‘경마기수의 스트레스 척도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5호 : 955-967.

전승철·김종선·정명진·이장규·장석암(2008), ‘경마기수 관련 손상분석’, 「한국운동재활학회지」

4(2), 79-91.

윤간우(2014), <경마산업 재해예방 및 감축 중장기 전략>, 한국마사회, 원진직업병관리재단.

토론문

당사자 이야기

당사자 이야기

고광용(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지부장)

저는 15년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일하고 있는 마필관리사지부 지부장 고광용입니다. 현장에 있는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수와 관리사들이 경마장을 떠났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나간 관계자도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마사회의 경마법규 위반으로 나갔습니다. 특히 기수는 경주중에 많은 제재를 받고, 그로인해 마사회를 떠났습니다.

기수의 대부분은 조교사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어나 조교사의 지시를 어기게 되면, 다시는 그 조교사가 말을 태우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조교사들끼리 저 000은 조교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조교사가 해당 기수에게 말을 태우지 않는 조교사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마사회 내부 재결팀(심판)은 위 사실을 알고 있지만 조교사의 작전 지시에는 관심도 없고(사례, 기수가 부정적 경주하면 기수 불러 질문하지만, “조교사님 작전지시,,,”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탔습니까?”, “조교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조교사가 죽으라면 죽겠네요”) 오직 힘없는 기수에게만 “왜 그렇게 말을 탔느냐”는 식으로 기수에게만 가혹한 제재를 줍니다.

마사회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

다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언제·어디서 하는지 모릅니다. 경마관계자(기수, 관리사)의 90%는 이런 회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기수나 마필관리사는 마사회법에 의해 누구(마주)를 만나서 말에 대한(컨디션 등)이야기하는 자체가 위반입니다. 조교사면허를 취득했다해서 실질적인 조교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사대부 심사에서는 마주에게서 말을 수급해오고, 마주 싸인을 받아오라 합니다. 현직에 있는 기수가 어떻게 마주에게 말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경우는 경마법규 위반이 되는 이 자체가 위반이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날 수도 없는데(법규상) 만나서도 안되는데 어떻게 받아옵니까! 이걸 불법을 하라는 건데 현실이 이렇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애초에 조교사 시험과 면접에서 모든 걸 통과하지 않았나요, 그러 조교서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면허를 취득했으니까 별도의 마사대부가 필요 없는 거지요.

기수가 말을 탈수 있는 건, 조교사가 99% 태웁니다. 기수는 본인이 말을 타고 싶어도 조교사가 태워주지 않으면 탈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말을 탑니까! 그런데 조교사의 지시를 어기면 기수생활을 관두겠다는 뜻이죠. 기수가 최소한의 임금이 있다면 당당히 거부할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작전(부정경마) 지시를 고발했을 때 조교사에게 강력한 제재가 주어지거나 기수를 회사에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었음...

부산과 서울의 차이는 서울 관리사나 기수는 최저 생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마사회에서 일하면서 아픈 곳이 있어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내가 다치지만 않고 열심히 일하면 정

년까지 일할 수 있지만 부산은 최저임금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어렵습니다. 혹시나 다치기라도하면 타격은 더 심하구요.

그렇다고해서 도둑질이나 강도, 사기를 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검은돈(불법사설관계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금시스템이라 생각 됩니다.

기수, 말관리사 바라는 것은 모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MEMO.

MEMO.